

	비교과지원센터 운영 규정	문서번호	4-1-12		
		제정일	2019. 11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비교과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비교과과정”이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말한다.
2. “운영부서”란 비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내 모든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직무범위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 비교과프로그램 기본계획수립
2. 대학 비교과프로그램 성과관리
3. 관련 규정 및 위원회 관리

② 각 운영부서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습역량에 관한 비교과프로그램은 교무처 및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등에서 운영 및 성과관리한다.
2. 진로심리에 관한 비교과프로그램은 학생처 및 진로지원센터, 학생지도상담센터 등에서 운영 및 성과 관리한다.
3. 취창업에 관한 비교과프로그램은 산학협력처 및 취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운영 및 성과 관리한다.
4. 기타 비교과프로그램은 관련 부서에서 운영한다.

③ 비교과프로그램 각 운영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부서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부서별 비교과 프로그램 등록, 운영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, 운영위원회, 교원,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센터장은 본 센터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간) ① 대학 비교과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의 사항과 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(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	비교과지원센터 운영 규정	문서번호	4-1-12		
		제정일	2019. 11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7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비교과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기준 수립
2. 비교과프로그램 신설, 조정, 평가 및 폐지
3. 비교과프로그램의 지원 및 운영부서 간 조정
4. 성과 확인·점검·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개선
5. 그 밖의 비교과과정 관련 주요 사항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